



[ 2019. 10. 2.] [ 455 , 2019. 10. 2., ]

( ), 044 - 215 - 7741

1

1 ( ) 「 」 ( " " ) 23  
( " " )

2 ( )

- 1. ( ' ' ):
- 2. :
- 3. :  
가 , ,

- 1. , ,
- 2.
- 3. 가
- 4.
- 5. , ,
- 6. , ,
- 7.

3 ( )

1  
2  
1 ,

4 ( )

- 1.
- 2. 5
- 3.
- 4. 가

---

5.

6.

7.

가

1

, ,  
6

, , 5

가,

5 ( )

9 1

1.

2. 11 , 14 , 16 , 18

3. 24

4. 12 , 15 , 17 가

5. 19 , 21

6. 45

7.

6 ( 가 )

12 , 15 , 17 가

가

가

가

가

5

가

2

1

7 ( )

1

---

8 ( )

1. , , , , , , ,

2. 13

3.

( )

가

9 ( )

1

가 3

7

가

가

가

2

가

가

2

2

10 ( )

1

3

가

4

2

2

가가

50%

9

1

가 3

7

가

4

---

8 4

가

11 ( )

1. :

2. :

3. :

4. 가 :

가

가

12 ( 가)

가

가

가

1 가

2

13 ( )

1

Activity Arrangement, Aide - Memoire, Record of Discussion

14 ( )

가

1. :

가,

2. :

가

15 ( 가)

16

( )

가

---

가

가

가

가

1 가  
가

2

16 ( )

가

1. :

2. : 가

가

17 ( 가)

18

( )

가

가

가

가

1 가  
가

3

18 ( )

1. : , , NGO, , ,

2. : , ,

가

가

---

가

19 ( )

1. ( )

2.

1

2

20 ( 가)

16 18

가

가

1. , , , ,

2. 1 가

3.

21 ( )

가가

1. 19 3 ( , 3

)

2. 19 1 2

3. 20 가

4.

2

22 ( )

가

3

---

2 가

23 ( )

, , .  
.  
, .

24 ( )

2

2

,

1

25 ( 가 )

가

1. 14

2. 16 2 2

26 ( )

,

, 가

27 ( 가 )

가

가

1

가

, ,

1

가

5

39

28 ( )

가,

가

,

가 16

가

가

,

---

1 2  
가 .

29 ( 가) 12 , 15 , 17 가

1 가 가 , , , 가

1 가 .

3

. 가 , 가

30 ( ) 9

2 가 10 4 가 가 가

1 가 가 3 가 , 가

가 가 가 .

가 가 가

3

31 ( ) 가 ,

1. 가

2.

3.

4.

5.

32 ( ) 5 , ,

가 .

---

1

가

1

가

가

2

가

33 ( )

32

34 ( )

가,

3

35 ( )

10 4

가

36 ( )

2

1

1

4

1

37 ( )

「( ) 가 」 5

가 , 가 ,

가 , 가

2 가 가

38 ( ) 29 5 가 ( )  
20%  
1 가(50% ) 400%  
( )

39 ( ) , , , ,  
, , , 가 4 「 」 .  
, 「 」 4( " " ) 가  
150%  
2 가 , , ( )

- 1. 15 30 : 가 80/100
- 2. 30 90 : 가 70/100
- 3. 90 180 : 가 60/100
- 4. 180 : 가 50/100

4 ‘가’ ( ) ‘ ’ ( )  
, 가 50% .( )  
)

4 ,  
3 ‘가’ , .

40 ( ) 가 35 ( ), 36 ( )  
) 가 , .  
300~600

3 가



---

2

가

3

47 ( )

가

15

( )

48 ( )

1

9 ( )

49 ( )

1.

:

가

2.

:

( )

43 ( ) 1

가

가

50 ( )

6 ‘

5

51 ( )

【별표 1】 KSP 자문사업 추진 절차

【 KSP 자문사업 추진 절차 】

사업단계		내용
사업 준비	사전협의	○ 협력대상국 관계자와 사업 내용 구체화, 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항 등 협의
	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연구진 구성	○ 사전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행방식 결정 (직접 또는 위탁) ○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연구진 구성
사업 수행	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	○ 연구방향 등을 현지에서 발표·논의하고, 정책우선순위 파악 및 전문가 면담
	사업계획서 평가	○ 착수보고회 개최 후 사업계획서 평가 및 수정·보완
	세부사업계획 체결	○ 협력대상국과 세부사업계획 체결
	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	○ 잠정 연구내용을 현지에서 발표·논의하고,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세부사항 조사
	중간보고서 평가	○ 중간보고회 개최 전 중간보고서 내용 점검 및 수정·보완
	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	○ 협력대상국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연구내용 발표·논의, 실무연수
	최종보고서 잠정안 평가	○ 최종보고회 개최 전 최종보고서 잠정안의 내용 점검 및 수정·보완
	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	○ 최종 연구결과를 현지에서 발표·논의하고, 고위정책결정자 대상 주요 정책제언 보고
	최종보고서 완성	○ 최종보고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완성
사업 종료	종료평가	○ 사업 수행과정의 적정성과 산출물의 품질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검토
	결과물 제출 및 공유	○ 최종보고서 등 사업 결과물 제출 및 국·내외 관계자 공유

**【별표 2】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 기준**

평가 항목		세부평가 항목	배점(100점)
사업 수행 능력	사업기관의 관리능력	사업추진체계 및 방식, 사업수행계획	60점 이내 (항목별 배점은 20점 이내)
		유사용역 수행실적	
		재정상태, 기관규모 등 일반현황	
		사업관리 책임자 역량 및 인력운용계획	
	과거 계약사항 위반 및 사업수행성실도 등	최대 5점 범위에서 감점 가능	
	연구진의 기술·지식능력	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·지역 전문성(연구실적 및 개발협력사업 참여실적)	30점 이내 (항목별 배점은 20점 이내)
사업과제에 대한 이해			
과거 참여사업 평가결과(보고서 품질 평가, 종합평가, 용역 결과물 제출기한 준수 등)		최대 5점 범위에서 감점 가능	
입찰가격			10점

**【별표 3】 전문가 등급 기준**

전문가 등급	자격 요건
특급	1. 장·차관의 직위에 있던 자 2. 대학교 총장 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4. 제1호 내지 제3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1급	1.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. 4년제 대학 정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 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. 해당 분야 20년 이상 경력자* 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2급	1. 3·4급 공무원 2. 4년제 대학 부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 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 4. 해당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* 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3급	1. 5급 공무원 2. 4년제 대학 조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 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차장급 4.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* 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4급	1. 4년제 대학 조교수로 2년 이상 경력자 2.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* 3. 제1호 내지 제2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5급	1~4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\*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 시 경력 5년 인정

**【별표 4】 전문가 여비 산정 기준**

전문가 등급	여비 산정 구분
특급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제1호 다목 (항공료는 중간운임기준 지급)
1급	
2급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제1호 라목
3급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제2호 가목
4급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제2호 가목
5급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제2호 나목

**【별표 5】 전문가 자문료 지급 기준**

(단위: 만원)

전문가 등급	자문활동										
	세미나			강의 <sup>1)</sup>		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	수행기관 선정 평가	연구진 선정 심의	사업계획서 평가	중간/최종 보고서 평가	국외출장 자문
	발표	사회	토론	1시간	초과	간당 최대건	1회	1회, 서면 <sup>2)</sup>	1건	1건	1일
특급	70	50	35	40	30	6	30	10	20	30	30
1급											
2급	50	35	25	30	20	6	30	10	20	30	30
3급	40	30	20	20	15	6	30	10	20	30	30
4급	40	30	20	20	15	-	-	-	-	-	-
5급	30	20	15	15	10	-	-	-	-	-	-

- 1) 최대 3시간까지 인정, 초과분은 1시간 초과시 시간당 금액을 의미
- 2) 연구진 선정 심의를 위한 대면 회의 시에는 자문료 대신 지침 제41조 제3항에 따른 수당 지급
- 3) 기타 자문활동은 30만원 이내에서 자문의 성격, 난이도,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지급
- 4) 세미나, 강의 및 대면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 및 시외 경비는 실비로 지급

【별표 6】 사업비 항목 구분

단위사업	목	세목	내역 (예시)	
각 자문사업	인건비	사업총괄기관 인건비	사업관리자 급료 및 성과급	
		사업수행기관 인건비	연구진 급료 및 성과급	
	경비	(여비)	국내여비	국내출장 여비, 전문가 초청 여비 등
			국외여비	국외출장 여비, 현지활동 지원비 등
			외빈초청경비	외빈 초청 시 여비
		(운영비)	전문가활용비	전문가 자문료, 통·번역, 에디팅 비용, 수석고문 자문료, 현지전문가 자문료, 회의 참석 수당 등
			회의비	공식 오·만찬, 다과 등
			임차료	차량·회의장 등 임차료
			수용비	인쇄비, 제본비, 기념품 구입비 등
			수수료	환전, 송금, 인지대 등
			공공요금	우편·배송료, 통신비 등
			외부용역비	위탁사업비, 기타 외부용역비
	일반관리비	사업총괄기관 일반관리비	사업총괄기관 집행분의 6% 이내	
사업수행기관 일반관리비		사업수행기관 집행분의 6% 이내		
기타 사업	상동	상동	상동	